

믿을주는 소비자금융! 안심되는 소비자금융!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100-704)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13층 / TEL 02)3487-5800 / FAX 02)6670-9650 / WWW.CLFA.ORG.KR

문서번호 : 기획조사-2015-115

발신일자 : 2015. 12. 29.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법정 최고금리 실효 시 이자수취 관련 유의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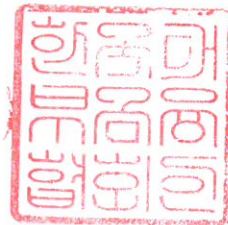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관련 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16.1.1일부터 실효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서민층의 이자부담 가중 등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3. 이에 협회는 '16.1.1일부터 관련 규정의 개정 전까지 대부계약 체결 시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연34.9%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처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조사부 한성택 대리, 김현민 주임(내선 115,116)

- 붙임: 1. 금융위원회 안내공문 1부.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부. 끝.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수신처 : 가온인베스트먼트대부 외 374개 전 회원사 대표이사



금 융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정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 중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 취급 관련 업무 지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 관련 규정(제8조)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16.1.1일부터 실효됨에 따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전까지 대부업자들의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 및 이로 인한 서민층의 이자부담 가중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기관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도록 '15.12.31일까지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6.1.1일부터 관내 대부업자들의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금리 수취 업자 적발시 시정 권고, 해당 업자에 대한 지도 강화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성남시장, 의정부시장, 안양시장, 부천시장, 광명시장, 평택시장, 동두천시장, 안산시장, 고양시장, 과천시장,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오산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하남시장, 용인시장, 파주시장, 시흥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여주시장, 김포시장, 화성시장, 광주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 연천군수, 가평군수, 양평군수, 금융감독원장

행정사무관

진형구

★서민금융과 전결 2015. 12. 29.

장

김기한

협조자

시행 서민금융과-1386

접수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번호 02-2156-9670

팩스번호 02-2156-9646

/ surfin99@korea.kr

/ 대국민 공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금융개척 돈이 되는 활기찬 경제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상호여전감독국, 대부업검 사실			
책 임 자	신진창 과장(2156-9850) 김기한 과장(2156-9470) 양일남 실장(3145-8260) 장병용 국장(3145-6770) 박상춘 국장(3145-7550)	담 당 자	홍상준 사무관(2156-9860) 진형구 사무관(2156-9475) 엄주동 팀장(3145-8262) 이길성 팀장(3145-6772) 김정곤 부국장(3145-7552) 정용걸 팀장(3145-7447)	
배 포 일	2015.12.29.(화) 14:00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3매

제 목 :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 ☐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일시적 실효에 대응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 [연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 국민들께서는 연 34.9%를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1. 최고금리 규제 현황

- ☐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의 유효기간이 '15.12.31일로 만료되는데다, 「이자제한법」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

- 이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2. 향후 대응 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12.28일 “정례 금융현안점검회의” 및 '15.12.2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수립
 -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15.12.29일~12.31일)
 -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금리 실효기간 중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16.1월초),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고금리 업체 적발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16.1.1일~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일)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
- 한편, 금번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 ☐ 국민들께서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회사 : 금융감독원(☎1332), 대부업체 : 관할 시·군·구청

- ☐ 아울러, 금융거래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